

는 실정으로 향후 8m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동 매각대상 토지와 8m 도로의 건너편은 아직도 공지가 많으므로 차후 도로를 확장할 경우 그쪽으로 확장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매각코자 합니다.

동 토지는 국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현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種求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趙大顯 專門委員 趙大顯입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검토의견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대상토지〉

· 재산표시: 대림1동 906-112 대지 48㎡중 18㎡

· 이용실태: 지적상 B=10m 도로에 접한 토지로 총 48㎡ 중 18㎡는 개인의 담장안에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0㎡는 도로로 사용.

〈재심의 사유〉

· 제25차 회의시 견해 대립으로 심도있는 심의 필요하여 추후 재심의기로 결정.

※대립된 견해

견 해 1	견 해 2
〈매각사유〉 ○매수 신청인(김순정)의 주거용건물 담장안에 점유 ○20년 이상 점유사용 ○신청인이 매입후 건물신축	〈가각정리 도로로 활용함이 바람직〉 ※이유 ○총 48㎡ 토지형상이 별첨 도면과 같이 3등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때 도면상 1번부분-매각계획토지 2번부분-현재 도로로 사용 3번부분-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토지형태로 보아 향후 효용가치가 없어 906-51 토지주 매각신청 기대곤란 ○해당토지가 분할이 안된 토지이고, 별첨 도면과 같이 B=10m 도로와 B=4m 도로 가각에 접해 있어 가각정리하여 도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심의중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지의 관리 계획 변경은 동의안건으로 처리될 안건이 아니라 의결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영등포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결안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동의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후 변경되는 안전처리에 있어서 동의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의결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무부에 질의 해본 바 의결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 심의처리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될 것이므로 향후 구청이나 의회 모두 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에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청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種求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전 위원들께서 현장을 답사했던 건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